

# 할부금융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저축은행이 할부금융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준용규정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대출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할부금융”이란 재화나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)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매도인 및 매수인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등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. <개정 2017.8.11.>
2. “할부금융자금”이란 저축은행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,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말한다.
3. “할부금”이란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자금 및 그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.
4. “할부거래법”이란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말한다.

**제4조(할부금융 제한)** ① 매도인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. 다만, 매도인이 사실상 소비자(할부거래법 제2조제5호의 소비자를 말한다)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채무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8.11.>

② 다음 각 호의 재화등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.

1. 농산물·수산물·축산물·임산물·광산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
2.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
3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
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
5. 부동산
6. 그 밖에 할부금융으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화등

**제5조(거래조건의 주지 의무)** 저축은행은 할부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(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)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저축은행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재화등 명세서)** ① 할부금융 약정서에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등의 명칭, 수량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금융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급계약서 등 매매 계약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할부금융자금 한도 등)** ① 할부금융자금은 재화등의 구매자금(계약금, 중도금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선수금은 제외한다) 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매도인에게 할부금융자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이자율 등)** 이자, 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과 그 계산 방법은 업무방법서, 요율계산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9조(상환방법)** ① 할부금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상환 받는다.

② 할부금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, 원금일시상환은 취급할 수 없다. 다만, 채무자와 협의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식상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대출기간)** 할부금융에 따른 대출기간은 10년(혼합식상환의 경우 5년)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과의 대출약정 및 관련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**제11조(업무 대행 또는 위임)** ① 할부금융 업무 일부를 매도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.

② 전항 본문의 경우에 수수료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**제12조(청약 철회)** ① 할부거래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재화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.

1. 채무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(이하 “철회서면”)이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발송(이 경우 철회서면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)되었는지 여부

2.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자금이 있는지 여부

3.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할부금이 있는지 여부

② 제1항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철회서면이 발송된 경우,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자금을 지체없이 반환받고, 채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.

**제12조의2(대출청약 철회의 제한)** 채무자가 할부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은 후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21.3.24>

[본조신설 2016. 12. 19]

**제13조(항변권)** ① 채무자로부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는 의사(이하 “거절의사”)를 통지 받은 경우에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융자금 지급과 채무자에 대한 할부금(채무자가 거

절의사를 통지한 당시에 납입되지 않은 할부금을 말한다) 청구를 즉시 정지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확인한다.

1. 거절의사의 사유가 할부거래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할부금이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지 여부
-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, 그 거절 의사를 수령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거절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
2. 거절의사의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

**제14조(채무자 불이익 금지)** 채무자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철회권 또는 항변권과 관련하여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면,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납입 거절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할부금융대금 연체 등록
2. 해당 할부금에 대한 지연 이자 및 수수료 징구
3. 그 밖에 해당 채무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

**제15조(기한의 연장)** ① 혼합식상환방법(원금일시상환 부분에 한함)의 경우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
② 분할상환방법의 경우 당초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. 이 경우 대출기간의 3분의 1이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,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수입한다.

**제16조(매도인에 대한 확인)** ① 저축은행은 매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할부금융 대상이 되는 재화등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
2. 금융질서문란정보 중 금융거래관련부당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(이 경우 매도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에 대하여 확인)
3.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② 매도인과 계속거래 약정(특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맺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가 신청하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할부금융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체결한 경우, 계속거래 약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매도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,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. 3. 9.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. 12. 19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. 8. 1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3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.3.25부터 시행한다.